

년 월 일	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
서울특별시의회 의장 (인)	
<p>5.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 에關한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>6.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(서울特別市長 提出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14時 47分)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면제대상)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임대,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·등록세·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.</p> <p>제3조(사무처리의 위임)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 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</p> <p>제4조(면제신청)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,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</p>
(議事権 3打)	부 칙
<p>○ 委員長 朴尙東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과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権 3打)</p> <p>지난 第53回 臨時會 會期時 서울特別市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. 곧바로 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質疑하실 委員이 계시면 質疑하여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(「委員長님!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네, 爾相根委員님 말씀하시지요.</p> <p>○ 爾相根委員 먼저번에 이案件은 전부 質疑를 答고 答辯까지 듣고 한 事項이기 때문에 더 質疑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原案대로 通過시키는 것을 提議합니다.</p> <p>○ 委員長 朴尙東 지난 번에 우리가 質疑와 答辯을 다 들은 것입니다. 지난 번에 日程調整 관계로 해서 이것을 금 會期로 留保를 시킨 것입니다. 異議가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國家有功團體에대한市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합니다. 異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権 3打)</p>	<p>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.</p>
(參 照)	<p>○ 委員長 朴尙東 다음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</p>
서울특별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	